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10년 지켜온 국민안심, 100년 built 안심기준

경인식약청 수입검사 월간 뉴스레터

제87호 '26.6.

수입검사관련 정보

◆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품목	주요내용
가공식품등	○ 중국 SHANDONG LIXING TIN FOOD CO.,LTD.사 제조 과·채가공품 / 사이클라메이트
	○ 바실러스세레우스 및 생성독소 '세레울리드' 존재 가능성에 따른 예방조치로 회수 중인 영유아용 조제분유·조제식(총 385건) * 상기 제품 수입신고 시 반려하고,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되지 않도록 협조
	○ 미국 California Dairies Inc.사 제조 분유류 / 살모넬라 * 미국 FDA, 'California Dairies Inc.'사 살모넬라 오염으로 '탈지분유' 회수 정보에 따른 조치
	○ 중국 JINHUA LAOJIEKOU FOOD CO.,LTD사 제조 기타 농산가공품,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사이클라메이트
	○ 스리랑카 SUSIKO BAKERS (PVT) LTD사 제조 빵류(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에 한함) / 세균수
	○ 인도네시아 PT. MULIASARI PERMAI사 수출 커피원두(씨앗) * 건조, 냉동, 신선 포함 / 이사-디(2, 4-dichlorophenoxyacetic acid)
	○ 베트남 DALAT NATURAL FOOD JOINT STOCK COMPANY사 제조 서류가공품(고구마 함유 제품) / 클로르메콰트(Chlormequat)
	○ 벨기에 CENTHO-CHOCOLATES(BE000001646)사 가공식품 수입중단/ '26.5.22. 선적일부터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
	○ 베트남 LONG AN FOOD PROCESSING EXPORT JSC사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 현장검사('동클로로필린나트륨' 수출국 표시 여부 등 확인철저)
	○ 중국산 '소귀나무 열매' 함유 식품 /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사카린나트륨, 사이클라메이트
	○ 중국 CHANGLI DAMING VERMICELLI FACTORY사 제조 가공식품 / 무작위 중점 검사항목
농·축·수산물	○ 이탈리아 EMILIO MAURI S.P.A.(EST NO.: CE IT 03 48)에서 제조한 축산물(유가공품) 수입중단: 선적일 기준 2026.6.1.부터 - 해당 해외작업장의 수입 중단(2026.6.1.) 이전 선적된 치즈류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휴가철 대비 수입단계 검사강화

○ 검사기간: 2026. 6. 8. ~ 2026. 6. 19. (접수일 기준 10일)

○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검사대상		검사항목
구분	품목명	
가공식품	조미건어포	대장균
	기타 어육가공품 * 제품명에 핫바, 어묵바 등 포함 제품으로 대상 선정 (휴게소, 야외활동 주요 소비 제품)	대장균군(살균제품), 타르색소
기구류	캠핑, 바비큐용 기구류 * 제품명에 캠핑, 바비큐 포함 제품(그릴, 꼬지, 집게 등)으로 대상 선정 / 재질 불문	무작위 검사 항목
축산물	소시지류	보존료
수산물	냉동 새우	니트로푸란대사물질
	참돔(활), 농어(활)	에톡시퀸, 엔플로사신/시플로플록사신

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 한 번에 검색한다

- 식약처·법제처, 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시스템 연계 협약 체결
- 고품질 식약처 규제정보와 법제처 법령정보 공동 제공…해외 진출 도움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0일(수) 식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23년부터 화장품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범위를 식품 분야까지 확대하여 앞으로는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규제 및 통관 절차 등 정보 부족 문제 해소와 K-푸드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CES FoodDB, Fooddb.mfds.go.kr)'*을 운영하고 있다. CES FoodDB에서는 미국·중국 등 주요 20개국과 라면·음료·과자 등 30개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6년까지 대상국을 30개국으로, 품목을 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 내용]

- **대상국가**: 필리핀, 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대만, 베트남, 한국, 일본, 러시아, 홍콩, 캐나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독일, 영국, 인도
- **대상품목**: 라면, 김, 비스킷/쿠키, 과실주스, 커피 엑기스, 김치, 만두(속을 채운 파스타), 인삼 음료, 찌거나 삶은 쌀, 고추장, 홍삼 음료, 홍삼포, 홍삼정, 요구르트, 유산균, 라면(건면), 냉면, 원두, 액상커피, 사골육수, 죽, 쿠키, 비스킷, 유자차, 유자청, 빙과, 아이스크림, 샤베트, 이온음료, 양조간장
- **제공내용**: 품목별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식품안전 규제기관 정보, 통관 절차 및 준비서류 등

* 시스템 이용 방법 동영상: https://youtu.be/Psm3mYYsDBM?si=1SGZcoLQHtbbYbxO

이번 협약으로 식약처의 CES Food DB와 58개국의 법령 원문 및 번역본 약 3만 건을 제공하고 있는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식품 수출기업이 필요한 규제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산업협회·식품안전정보원 등과 협력해 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 진출 희망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관련 수출규제 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원문 및 번역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분산된 규제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정보 탐색 시간을 단축하고, 현지 규격·통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인증·통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1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법제처 주도로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효율적 제공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법제처의 해외 법령정보와 식약처의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가 연계되면, 우리 식품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K-푸드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수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외 법령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관계 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담당자	사무관	박재우	(043-719-2023)
담당 부서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서홍석	(044-200-6825)
		담당자	사무관	김수진	(044-200-6826)

법령 등 개정 사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6-40호, 2026.5.19.)

○ 주요내용

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11. 11-3 5) (11), 제5. 11. 11-3 5) (13), 제5. 11. 11-3 5) (16))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나.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 어획량 등 식용근거가 확인된 가시진흙새우(Argis toyamaensis) 등 73종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2. 동물성 원료에 추가
- 국내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작두콩 Argis toyamaensis) 등 73종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2. 동물성 원료에 추가
- 겹삼잎국화, 흑산내 추출물, 풀무치, 땃두릅나무 추출물을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 전통발효식품 유래 미생물과 국제 공인기관에서 식용근거가 확인된 미생물을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5건)
- 명칭, 분류 및 사용부위 등 식품원료 정비(264건)

다.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1), 별표 5 중 (171) 페닐부타존]

-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페닐부타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하고,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2026-234호, 의견제출기한 2026.7.14.까지)

○ 개정이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의약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식품등의 제품명으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별표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된 의약품의 명칭(제품명 또는 한약의 처방명 등을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 의견보내실 곳: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 ☎ 043-719-2183 (FAX) 043-719-2180 / heosk@korea.kr

알려드립니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 알림

○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 안내를 위해 정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자	6.10.(수)	6.16.(화)	6.25.(목)
장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서울역 인근) ※식약처 유튜브 채널 생중계	부산지방청 대강당	온라인 설명회
대상 지역	서울, 강원, 경기, 인천 등	부산, 대구, 경남 등	충청, 호남 포함 전지역 참가 가능

*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날짜)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참석 가능, 온라인 설명회 접속방법은 붙임 참조

○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20	수입식품법령 주요 개정사항 및 제도 개선 사례	수입식품정책과
14:20~14:40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우수수입업소 제도 운영 방향	현지실사과
14:40~15:00	통관검사 추진 방향 및 주요 부적합 사례	수입검사관리과
15:00~15:20	유통관리계획 및 부적합 제품 회수 절차	수입유통안전과
15:20~15:40	전자심사 개선사항 및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15:40~16:00	수입신고 시 주요 보완사례 등 안내	지방식약청
16:00~16:20	건의사항 접수 및 질의응답	-

○ 오시는 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일시	’26.6.10.(수), 14:00~16:00
장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지하1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0 (남대문로 5가 84-11))
연락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대표전화 : 02-2640-144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대표전화 : 02-2110-8139)

<오시는길>





◆ 수입수산물 검사 관련 알림[재안내]

○ 최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교잡종,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자생하지 않는 수산물이 수입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모든 수입 수산물**

○ 방법: 수입수산물 수입신고시 **'수입 수산물의 학명 서류' 확인**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위생약정국) 또는 해외제조업소가 발행한 학명증명서(비약정국)

○ 시행시기: 2026.7.1.선적분부터

○ 관련문의: 수입검사관리과 043-719-2231

◆ 신규 위생용품 무작위 표본검사 검사 실시 알림[재안내]

○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의 **신규 위생용품** 지정 및 시행(´25.6.14.)에 따라 1년간 유예되었던 **무작위 표본검사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26.6.14.부터 신규 위생용품도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 개별 공지 예정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4)

[붙임 1] 수입검사 뉴스레터 신청서

◇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에서는 수입 식품등 및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검사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정책메일서비스(PMS; Policy Mail Service)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책메일서비스(PMS)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수입관리과 팩스 (02-2110-081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메일서비스(PMS) 등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성명 (필수)	
2. E-mail (필수)	
3. 업소명 (필수)	
4. 관심분야(업종) (중복선택 가능)	1)수입식품() 2)축산물() 3)수산물() 4)위생용품() 5)신고대행업() 6)보관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 정책메일서비스(PMS) 등 제공

※ 수집·이용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E-mail, 업소명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

(2년 주기로 재동의 안내 메일 송부, 보유기간 만료 후 자동파기)

▶ **동의 거부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PMS 등이 제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_____(서명 또는 인)

경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 전화 02-2110-8159 팩스 02-2110-0815